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4년 6월 생산은 전월대비 0.1% 감소(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1% 감소하였음.
 - － 전년동월대비로는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0.5% 증가하였음.
- 제조업 생산은 의약품, 석유정제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6% 증가하였음(전년동월대비 3.9%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줄었으나, 금융·보험, 부동산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하였음(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2024년 6월 소비는 전월대비 1.0%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4.3%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9%)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5.2%),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8%)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0% 증가하였음(전년동월대비 3.6% 감소).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2.8%)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5%)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4.3% 증가하였음(전년동월대비 2.7%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0.3%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44.4% 증가하였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 | | 연간 | | | 분기 | | | | 분기 | | | | 월 | | |
|----|--------|------|------|------|------|------|------|------|------|------|------|------|------|------------|------------|
| | | 2021 | 2022 | 2023 | 2022 | | | | 2023 | | | | 2023 | 2024 |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6월 | 5월p | 6월p |
| 생산 | 전 산업 | 5.4 | 4.6 | 1.0 | 1.2 | 1.2 | 0.3 | -0.7 | 0.1 | 0.6 | 1.0 | 0.7 | -0.2 | -0.8(2.3) | -0.1(0.5) |
| | 광공업 | 8.5 | 1.0 | -2.6 | 2.5 | -2.2 | -3.6 | -4.8 | 0.4 | 2.6 | 1.3 | 2.2 | -2.0 | -0.6(4.3) | 0.5(3.8) |
| | 제조업 | 8.8 | 0.9 | -2.6 | 2.3 | -2.2 | -3.7 | -4.9 | 0.3 | 3.0 | 1.3 | 2.2 | -2.1 | -0.6(4.4) | 0.6(3.9) |
| | 건설업 | -6.7 | 2.8 | 7.3 | -1.5 | 1.5 | 1.5 | 4.3 | 2.8 | 1.1 | 1.1 | -2.5 | -1.2 | -4.4(-3.0) | -0.3(-4.6) |
| | 서비스업 | 5.0 | 7.0 | 3.2 | 0.6 | 3.3 | 1.6 | 0.3 | 1.0 | 0.0 | 1.0 | 0.3 | 0.8 | -0.8(2.1) | 0.2(0.5) |
| 소비 | 소비재 판매 | 5.8 | -0.3 | -1.5 | -0.9 | -0.7 | 0.8 | -1.5 | 0.6 | -0.5 | -1.9 | 0.4 | 1.6 | -0.2(-2.9) | 1.0(-3.6) |
| 투자 | 설비투자 | 9.6 | 3.3 | -5.4 | 1.8 | -1.5 | 9.6 | -1.5 | -8.0 | 1.0 | -3.1 | 3.1 | 1.1 | -3.6(-1.5) | 4.3(-2.7) |
| 물가 | | 2.5 | 5.1 | 3.6 | 1.6 | 1.9 | 1.1 | 0.4 | 1.1 | 0.6 | 1.0 | 0.7 | 0.1 | -0.2(2.4) | 0.3(2.6) |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3년 7월, 2024년 6월, 2024년 7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4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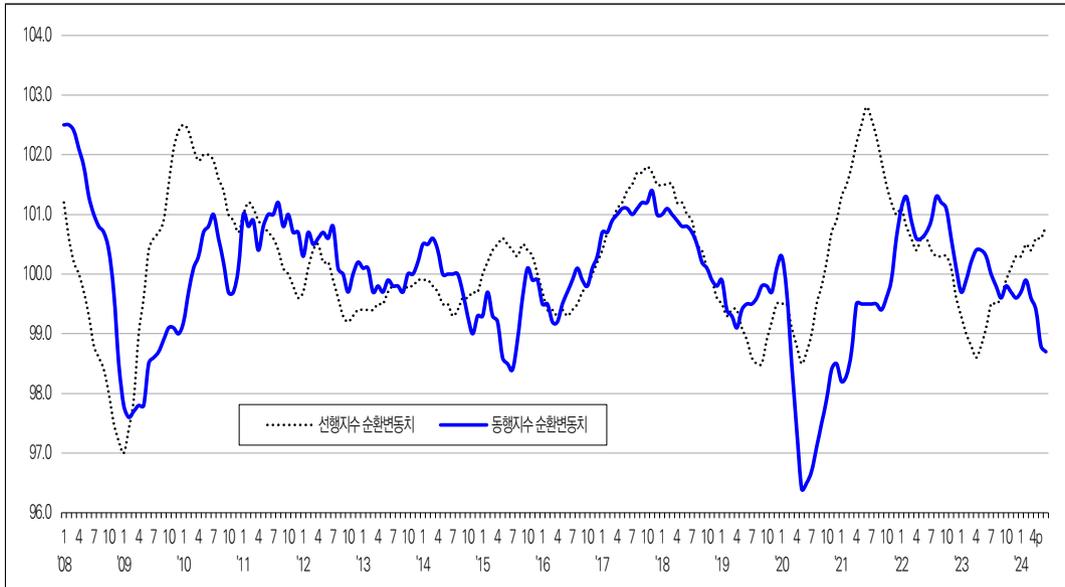
○ 2024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100)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음(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교통(1.7%), 식료품·비주류음료(0.7%), 음식·숙박(0.5%), 오락·문화(0.7%), 가정용품·가사서비스(0.9%), 교육(0.3%), 기타 상품·서비스(0.1%), 의류·신발(0.1%), 주류·담배(0.2%)는 상승, 보건, 통신은 변동 없으며, 주택·수도·전기·연료(-1.2%)는 하락하였음.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7% 상승하였고,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3% 하락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음.

◆ 2024년 6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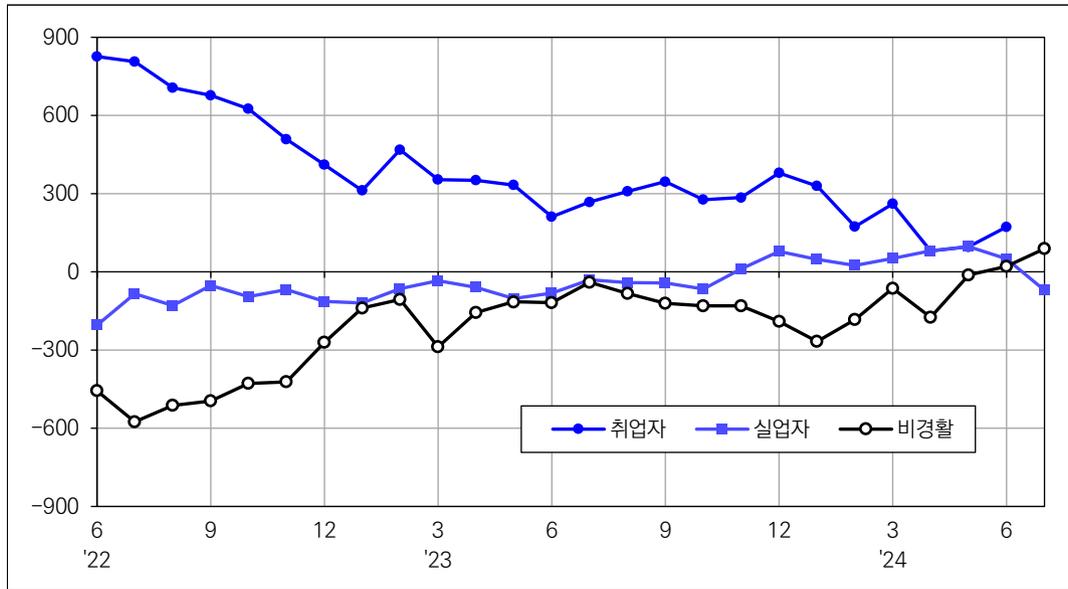
(이기범,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 반등, 전월대비 취업자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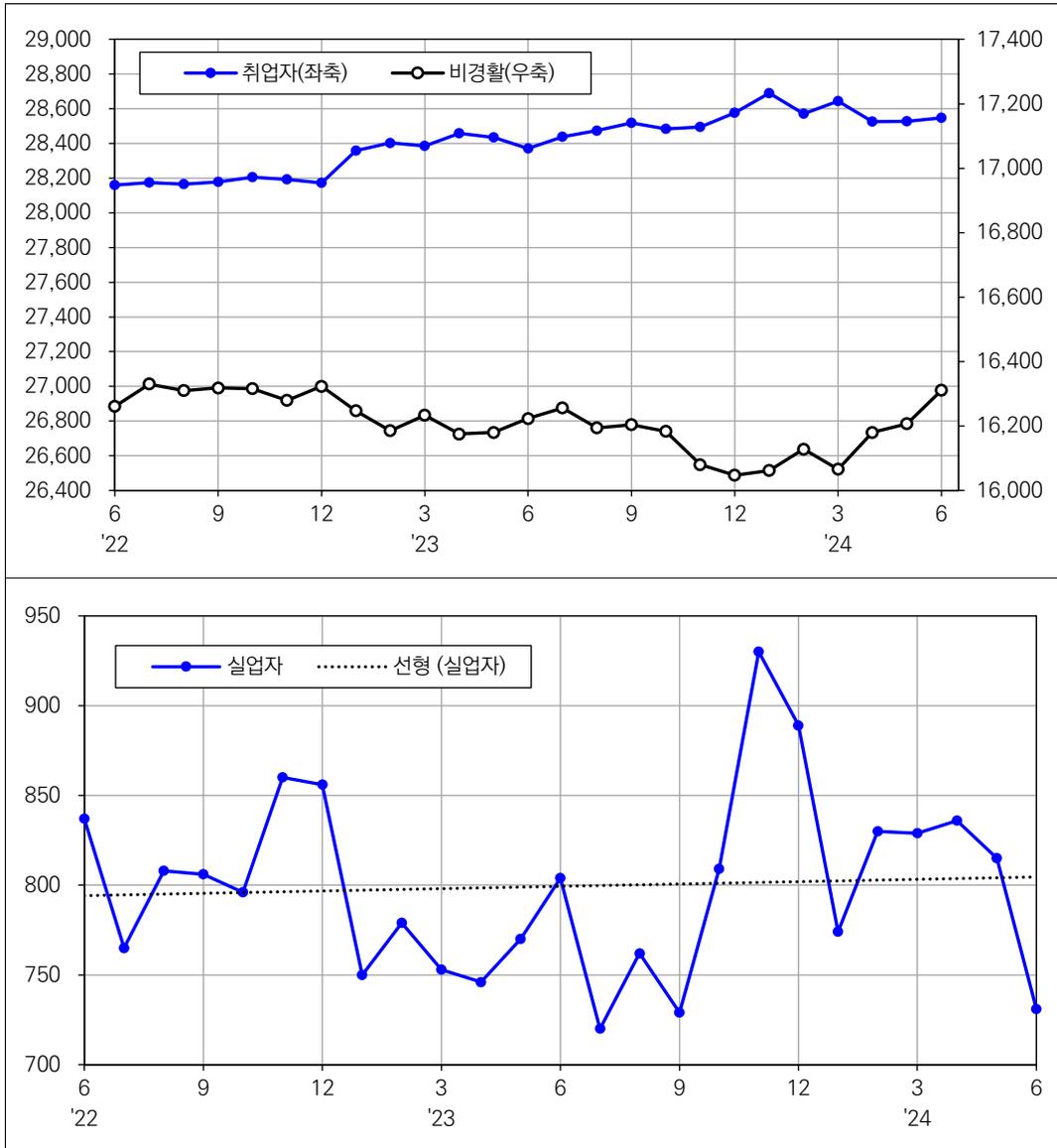
- 2024년 7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만 2천 명 증가하였음(전월대비¹⁾ 1만 9천 명 증가).
 - (연령별) 20대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30대, 60대 취업자 증가가 계속되었음.
 -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되었고,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이 둔화되었음.
 - (서비스업) 도소매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었고,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되었음.
 - (종사상 지위별) 제조업, 도소매업 상용직이 감소하였고, 건설업 일용직이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남성 '쉬었음'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지속되었음.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증감 현황(상) 및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하)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1]의 계속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20대, 40대 취업자 감소가 계속되었으며, 여성 위주로 30대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20대 청년층 취업자가 여전히 큰 폭으로 감소 중인데, 그중 간호간병 관련(여성·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상용직·전문가) 고용 감소폭과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컸음.

- 30대 여성 고용은 기존 증가세를 이어가고, 남성 고용은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중심으로 부진하였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위주로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이어졌음.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 | 15~19세 | | | | 20대 | | | | 30대 | | | |
|-----|--------|------|------|--------|------|------|------|--------|--------|------|------|--------|
| | 5월 | 6월 | 7월 | (전월비) | 5월 | 6월 | 7월 | (전월비) | 5월 | 6월 | 7월 | (전월비) |
| 취업자 | -6 | -14 | -21 | (-3) | -168 | -135 | -127 | (-26) | 74 | 91 | 110 | (31) |
| 실업자 | 8 | 3 | 4 | (-2) | 21 | -18 | -33 | (-7) | 18 | 24 | 11 | (-7) |
| 비경합 | -33 | -22 | -12 | (7) | -65 | -60 | -39 | (31) | -84 | -101 | -99 | (-15) |
| 실업률 | 4.1 | 2.0 | 2.9 | (-1.0) | 0.8 | -0.2 | -0.6 | (-0.1) | 0.3 | 0.4 | 0.1 | (-0.1) |
| 고용률 | -0.2 | -0.5 | -0.8 | (-0.2) | -0.6 | -0.1 | -0.1 | (-0.4) | 1.0 | 1.2 | 1.4 | (0.4) |
| | 40대 | | | | 50대 | | | | 60세 이상 | | | |
| | 5월 | 6월 | 7월 | (전월비) | 5월 | 6월 | 7월 | (전월비) | 5월 | 6월 | 7월 | (전월비) |
| 취업자 | -114 | -106 | -91 | (-9) | 27 | 2 | 23 | (8) | 265 | 258 | 278 | (18) |
| 실업자 | 11 | 18 | -17 | (-29) | 13 | 7 | -36 | (-18) | 26 | 17 | 2 | (-9) |
| 비경합 | -49 | -67 | -45 | (28) | 43 | 83 | 96 | (7) | 176 | 189 | 188 | (34) |
| 실업률 | 0.2 | 0.3 | -0.2 | (-0.5) | 0.2 | 0.1 | -0.5 | (-0.3) | 0.3 | 0.1 | -0.1 | (-0.1) |
| 고용률 | 0.1 | 0.2 | 0.3 | (-0.1) | -0.4 | -0.8 | -0.5 | (0.1) | 0.3 | 0.3 | 0.5 | (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었고, 서비스업 위주의 취업자 증가가 계속되었음.

-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전환되었으며,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 도매 및 소매업 고용이 여전히 부진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었음.
-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비대면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이어졌음.
-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 증가폭이 늘어났음.
-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줄었고, 감소하던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되었음.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 | |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 | |
|--------------|-------------|-----|-----|--------------|-----|-----|
| | 5월 | 6월 | 7월 | 5월 | 6월 | 7월 |
| 농림어업 | -34 | -33 | -26 | -38 | -7 | -7 |
| 광업 | -1 | -2 | -1 | 0 | 0 | 0 |
| 제조업 | 38 | 9 | -11 | -36 | 8 | -23 |
| 전기·가스·증기 | 8 | 4 | 5 | -3 | -2 | 2 |
| 수도·원료재생 | -10 | -1 | -12 | 0 | -2 | -5 |
| 건설업 | -47 | -66 | -81 | -66 | -21 | -19 |
| 도매 및 소매업 | -73 | -51 | -64 | -17 | 6 | -27 |
| 운수 및 창고업 | 49 | 47 | 65 | 5 | 0 | 21 |
| 숙박 및 음식점업 | 80 | 47 | 34 | 36 | -33 | 0 |
| 정보통신업 | 47 | 75 | 82 | 15 | 26 | 2 |
| 금융 및 보험업 | 1 | 20 | 29 | 1 | 18 | 5 |
| 부동산업 | -6 | -15 | -27 | 7 | -8 | -14 |
| 전문·과학·기술 | 7 | 30 | 36 | -8 | 9 | -1 |
| 사업시설관리지원 | -64 | -62 | -37 | 1 | -3 | 14 |
| 공공행정·사회보장 | 22 | 32 | 27 | 2 | 10 | 0 |
| 교육서비스업 | -45 | -63 | 2 | 12 | -5 | 40 |
| 보건 및 사회복지 | 94 | 120 | 117 | 7 | 11 | 8 |
| 예술·스포츠·여가 | 6 | 10 | 25 | -4 | 7 | -11 |
| 협회·단체·수리·기타 | 13 | -5 | 7 | 1 | -17 | 14 |
|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 -3 | 1 | 6 | -4 | 0 | 2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 5월에 줄어든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 취업자 증가폭은 유지되었음.

- 상용직은 산업별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하였음.
- 임시직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폭은 도소매업, 농림어업, 건설업 순으로 컸음.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 | |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 | |
|-------------------|-------------|------|------|--------------|-----|-----|
| | 5월 | 6월 | 7월 | 5월 | 6월 | 7월 |
| 상용직 | 75 | 139 | 96 | -78 | 48 | -14 |
| 임시직 | 249 | 204 | 227 | 29 | -60 | 22 |
| 일용직 | -116 | -27 | -71 | -2 | 0 | -42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 4 | 34 | 48 | 12 | 26 | 16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 -114 | -135 | -110 | -9 | 6 | 17 |
| 무급가족종사자 | -19 | -27 | 48 | -26 | -18 | -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 | 상용직 | | | 임시직 | | | 일용직 |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 |
|--------|-----|-----|-----|-----|-----|-----|-----|-----|-----|--------------|-----|----|--------------|-----|-----|
| | 5월 | 6월 | 7월 | 5월 | 6월 | 7월 | 5월 | 6월 | 7월 | 5월 | 6월 | 7월 | 5월 | 6월 | 7월 |
| 농림어업 | 12 | 7 | 6 | 5 | 7 | 12 | 5 | -12 | -9 | 8 | 13 | 14 | -43 | -35 | -43 |
| 제조업 | -11 | -36 | -38 | 32 | 17 | 5 | 0 | -2 | 9 | 12 | 14 | 12 | -1 | 10 | 1 |
| 건설업 | -40 | -31 | -36 | 19 | 21 | 17 | -43 | -46 | -40 | -3 | 12 | 3 | 2 | -23 | -29 |
| 도소매 | 30 | 24 | -16 | -39 | -21 | 13 | -10 | -9 | -9 | 16 | 6 | 7 | -41 | -45 | -53 |
| 운수창고 | 29 | 48 | 50 | 26 | 12 | 13 | 0 | 4 | 5 | -6 | 4 | 4 | -13 | -20 | -7 |
| 음식숙박 | 23 | 0 | 18 | 95 | 84 | 47 | -10 | -7 | -15 | 5 | -4 | -1 | -6 | -15 | -4 |
| 정보통신 | 22 | 58 | 66 | 8 | -1 | -7 | - | - | - | -16 | 3 | 3 | 20 | 14 | 17 |
| 금융보험 | -6 | 8 | 16 | 14 | 17 | 14 | - | - | - | -2 | -2 | -2 | -2 | 0 | 2 |
| 부동산 | -10 | -18 | -19 | -2 | -5 | -10 | -1 | -2 | -1 | -1 | 4 | 5 | 5 | 4 | -1 |
| 전문과학기술 | 3 | 16 | 18 | 11 | 15 | 12 | -3 | -8 | -4 | 1 | -5 | -8 | -3 | 5 | 13 |
| 사업관리지원 | -9 | 2 | -6 | -2 | -9 | 3 | -27 | -30 | -23 | -3 | -12 | -9 | -13 | -11 | -4 |
| 공공행정 | -4 | 18 | 7 | 22 | 15 | 20 | 4 | -1 | 1 | - | - | - | - | - | - |
| 교육서비스 | 17 | 19 | 30 | -54 | -67 | -36 | 2 | -3 | -1 | -12 | -2 | 0 | -9 | -10 | 6 |
| 보건복지 | -4 | 31 | 18 | 101 | 94 | 97 | 0 | -2 | 0 | -3 | -5 | -1 | 1 | 3 | 3 |
| 예술스포츠 | 9 | -3 | 3 | -7 | -3 | -1 | -5 | 3 | 6 | -4 | 8 | 12 | 2 | 4 | 4 |
| 협회단체 | 17 | -2 | -8 | 19 | 21 | 25 | -11 | -8 | 1 | 7 | 1 | 9 | -15 | -14 |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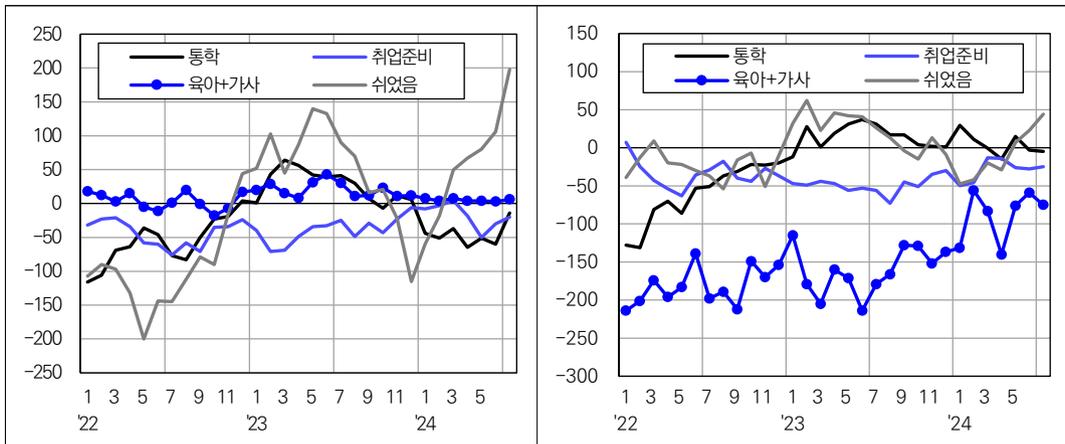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비경제) 실업률은 2.5%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 9천 명 증가하였음.

- 1년 이내 일자리 경험이 있는 실업자 중 전직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관리지원 서비스업 종사 실업자는 줄고, 건설업 종사 실업자는 늘었음.
- 남성 '쉬었음' 사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크게 늘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그 증가폭이 가장 컸음.

[그림 2] 성별(좌 : 남성, 우 : 여성) 및 사유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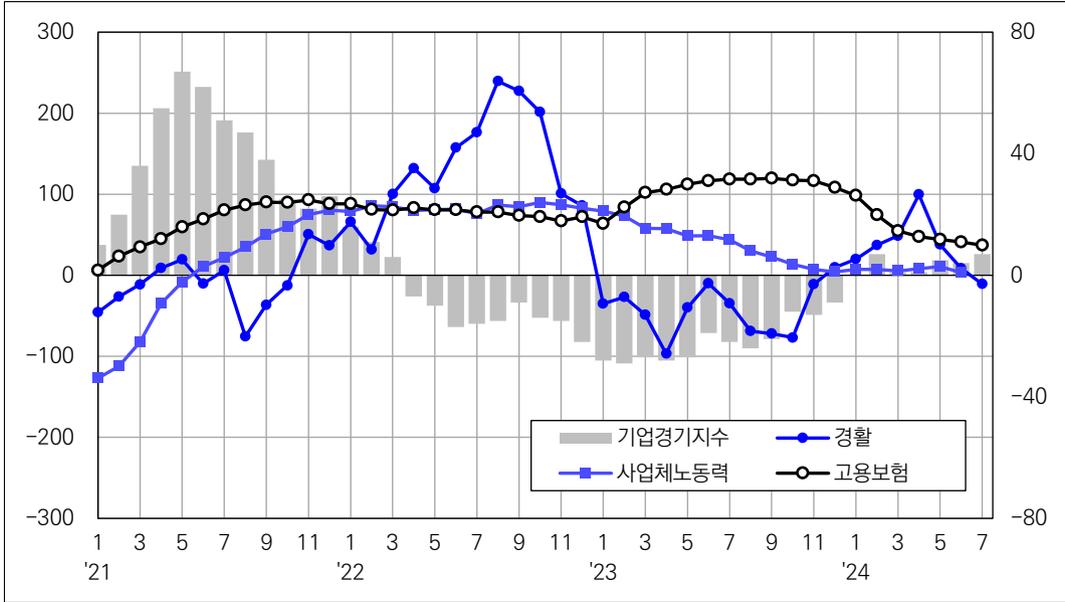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취업자 감소 전환,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

-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취업자는 2만 3천 명 감소하였음.
 -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 증가폭 둔화도 이어졌음.
 - 의약품 및 의료정밀기기 고용 부진이 지속된 반면, 자동차, 금속가공, 전기장비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세를 이어감.
-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만 1천 명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만 9천 명 감소하였음.
 - 건설업 계절조정 취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피보험자도 11개월 연속 감소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7월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은 지난 10년간의 감소 규모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였음.

[그림 3]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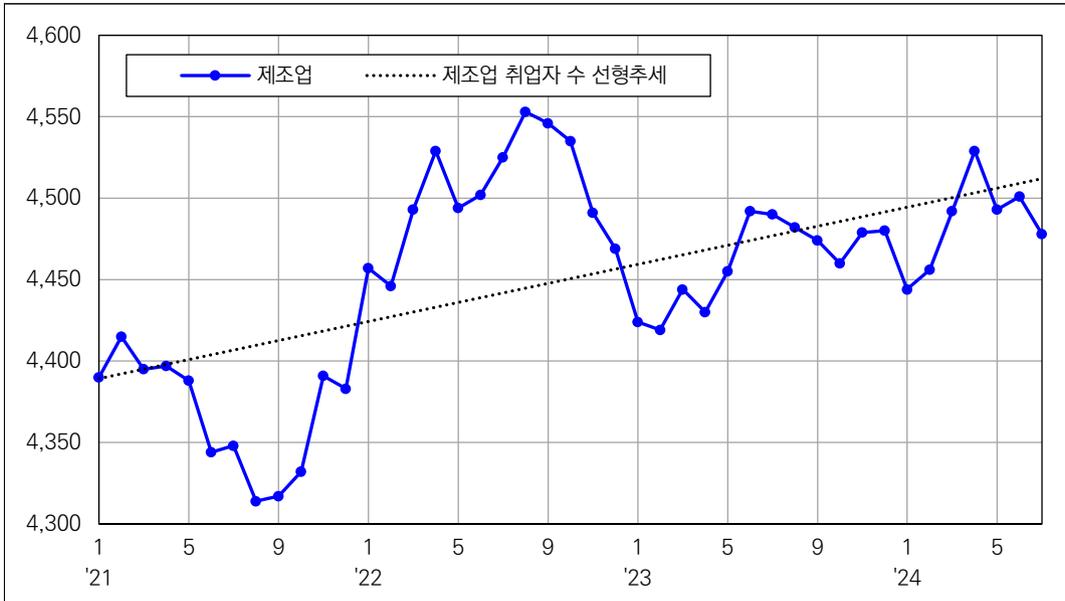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4]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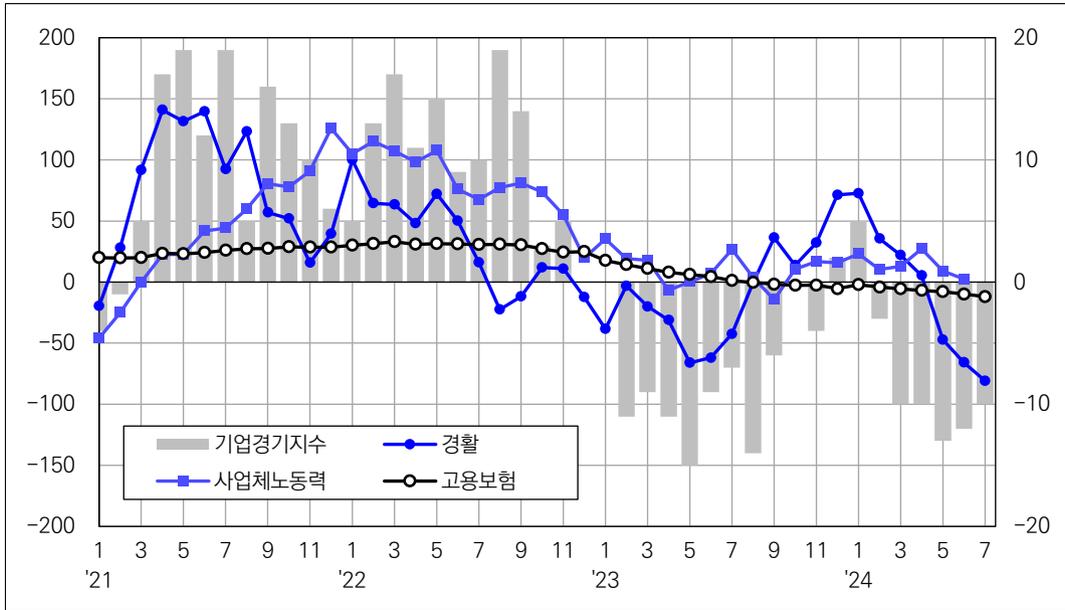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5]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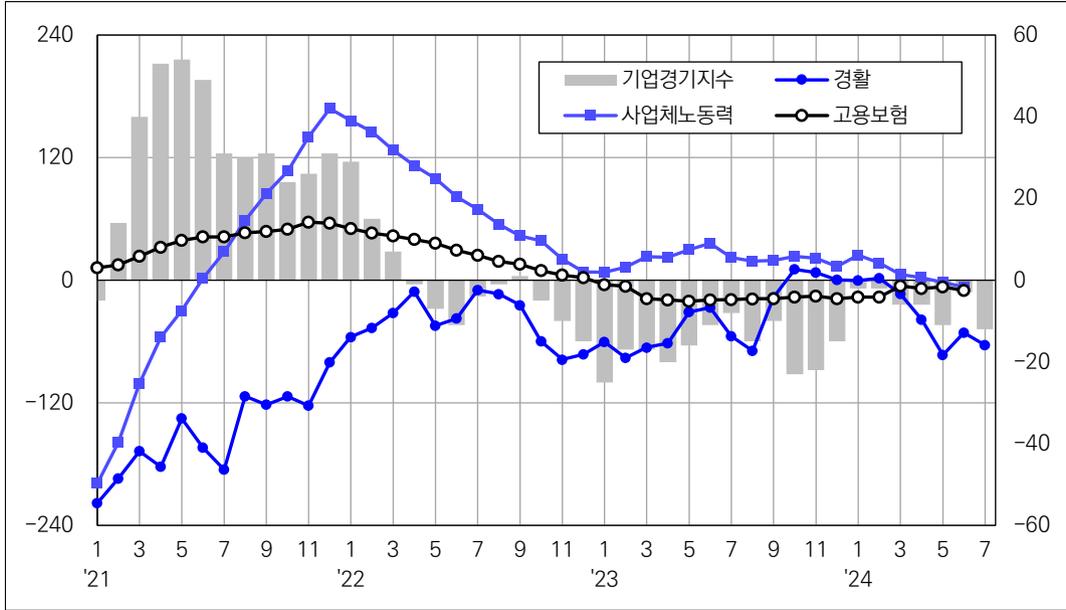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고용 상황이 양호한 반면, 도소매업, 사업시설지원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부진하였음.
 - (도소매)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으며 7월 취업자가 6만 4천 명 감소하였음.
 - (숙박음식) 7월 취업자가 3만 4천 명 늘었음.
 - (운수창고)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관련 고용 증가가 이어졌음.
 - (교육서비스) 종사자 수 1~9인 소규모 사업체, 임시직, 전문직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되었음.
 - (보건복지) 여전히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전 산업 중 가장 큰 취업자 증가폭을 유지 중이며, 7월 취업자는 11만 7천 명 증가하였음.

[그림 6]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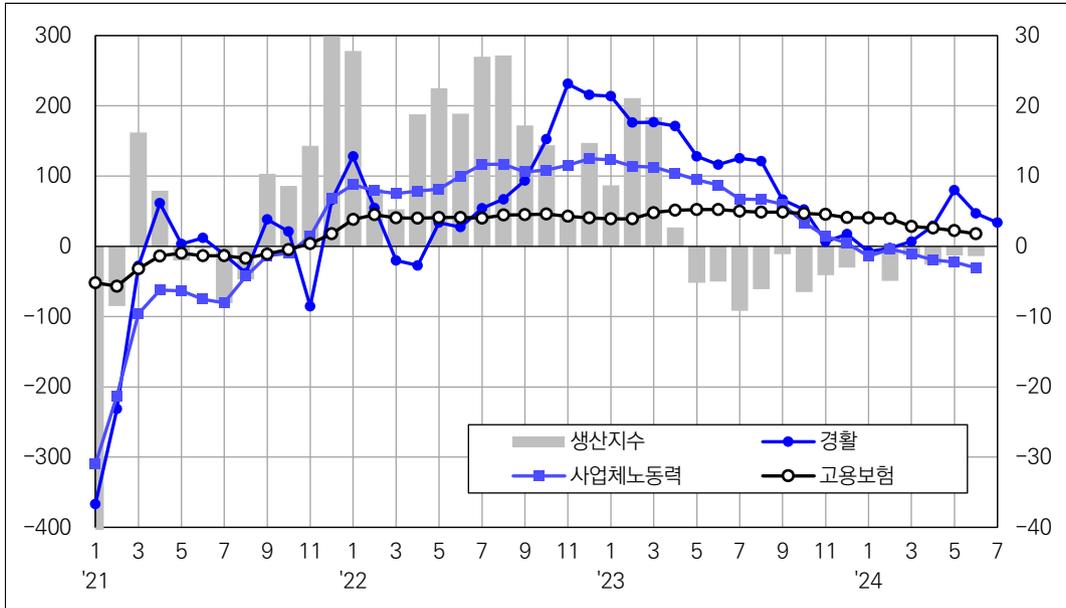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7]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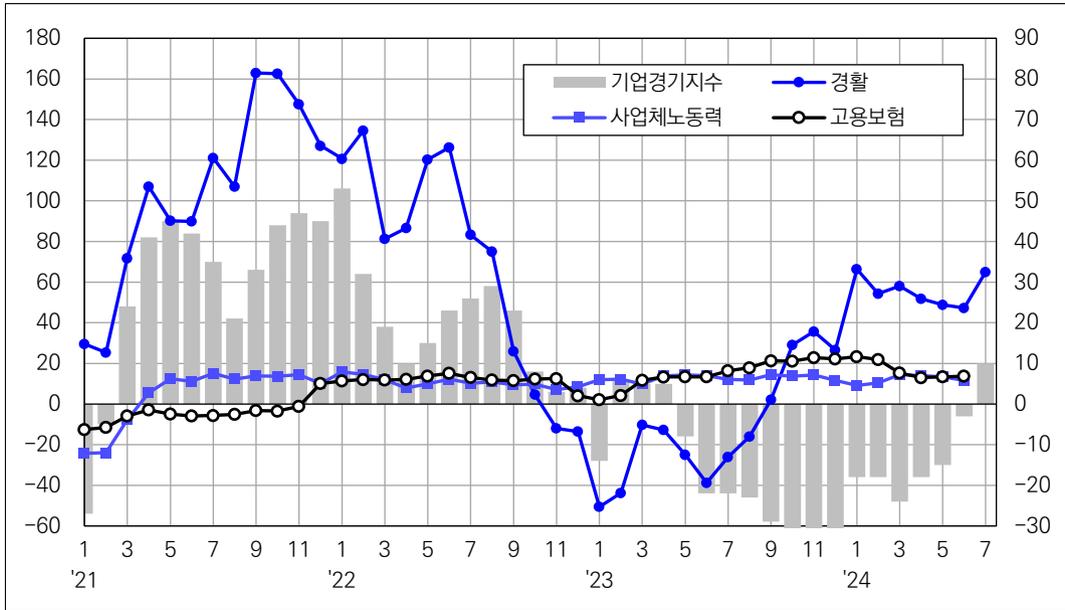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8]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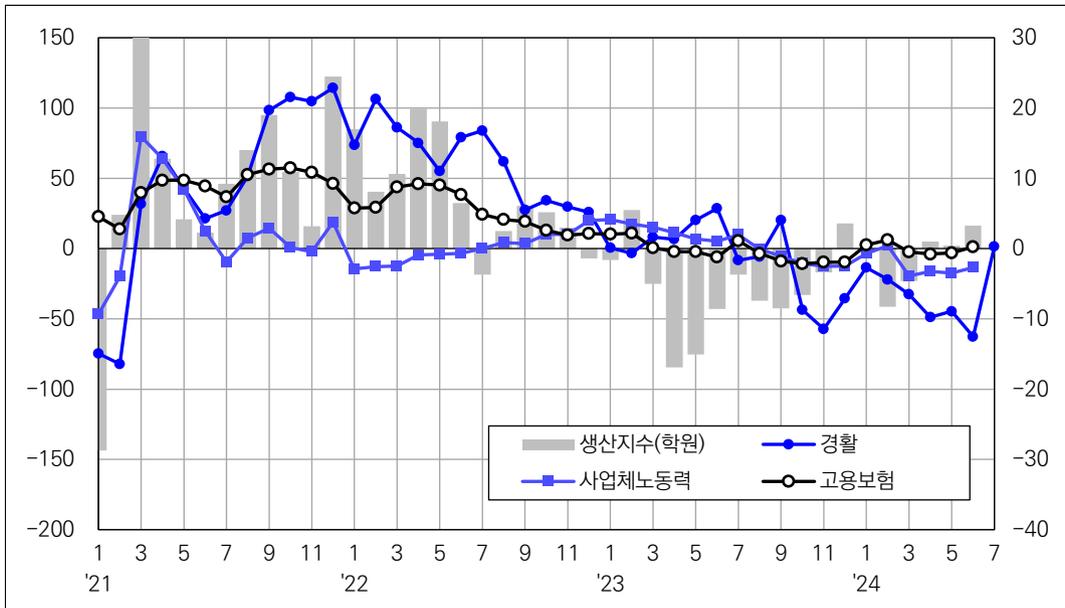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9]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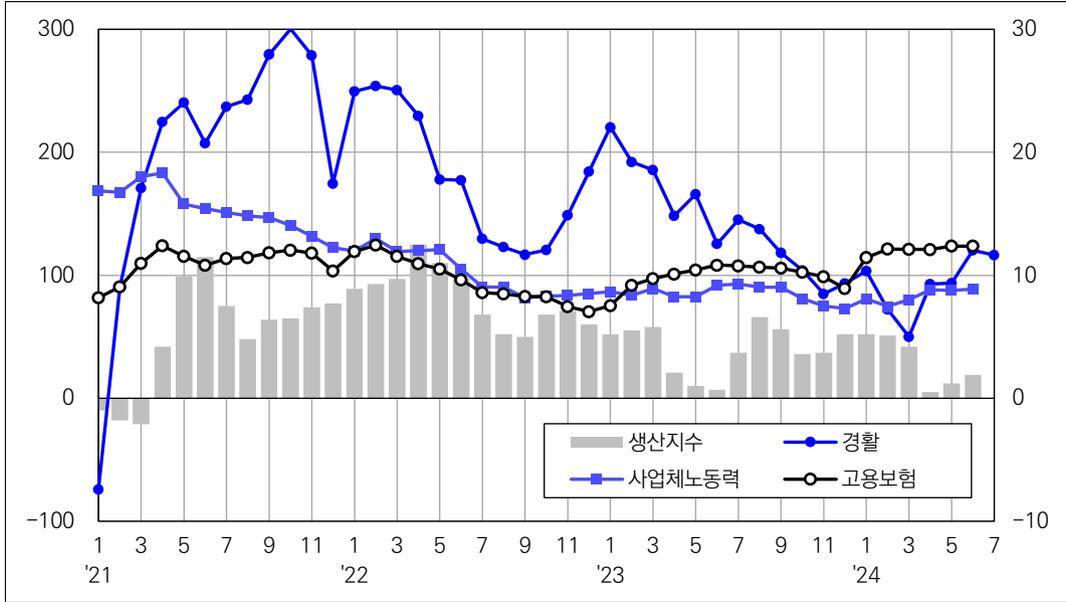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4년 5월 명목임금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2024년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2만 3천 원(3.2%)이었음.
 - 2024년 5월 상용근로자 임금(405만 9천 원)과 일용근로자 임금(182만 9천 원)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3.6%, 3.5% 증가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정액급여 증가폭이 축소되었음에도 특별급여 증가폭이 플러스(+)로 전환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하였음.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7.7%), 금융 및 보험업(4.9%), 도매 및 소매업(4.8%) 순으로 나타났고, 운수 및 창고업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이 컸던 데는 특별급여(86.9%)가 증가한 영향임.
- (1~5월 평균)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은 406만 7천 원으로 전년 동기간대비 2.3% 증가하였음.
 - 전년동기간대비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이 축소된 것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임.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하면서 상용근로자(-0.3%)의 임금은 감소하였음.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임시일용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간대비 5.0% 증가하였음.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4년 5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1~5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0.7%)은 물가상승률 둔화로 전년동기간대비 하락폭이 둔화되었음.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3 | | 2024 | |
|-----------------|-----------------|-----------------|-----------------|-----------------|-----------------|----------------|----------------|----------------|
| | | | | | 1~5월 | 5월 | 1~5월 | 5월 |
|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 3,527 (1.1) | 3,689 (4.6) | 3,869 (4.9) | 3,966 (2.5) | 3,979 (2.5) | 3,703 (3.1) | 4,067 (2.2) | 3,823 (3.2) |
| 상용 근로자 | 임금총액 | 3,719 (0.4) | 3,893 (4.7) | 4,095 (5.2) | 4,211 (2.8) | 4,224 (2.9) | 3,919 (3.5) | 4,059 (3.6) |
| | 정액급여 | 3,077 (2.2) | 3,181 (3.4) | 3,319 (4.3) | 3,444 (3.8) | 3,418 (4.1) | 3,408 (3.8) | 3,536 (3.4) |
| | 초과급여 | 200 (-0.9) | 208 (3.7) | 220 (5.7) | 227 (3.3) | 219 (1.9) | 240 (8.0) | 237 (8.6) |
| | 특별급여 | 441 (-9.9) | 504 (14.3) | 556 (10.4) | 540 (-2.9) | 587 (-3.5) | 271 (-3.9) | 548 (-6.7) |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 1,636 (7.8) | 1,700 (3.9) | 1,747 (2.8) | 1,785 (2.2) | 1,733 (0.1) | 1,767 (1.4) | 1,820 (5.0) | 1,829 (3.5) |
| 소비자물가지수 | 100.0 (0.5) | 102.5 (2.5) | 107.7 (5.1) | 111.6 (3.6) | 110.6 (4.2) | 111.1 (3.3) | 113.8 (2.9) | 114.1 (2.7) |
| 실질임금증가율 | 0.5 | 2.0 | -0.2 | -1.1 | -1.6 | -0.2 | -0.7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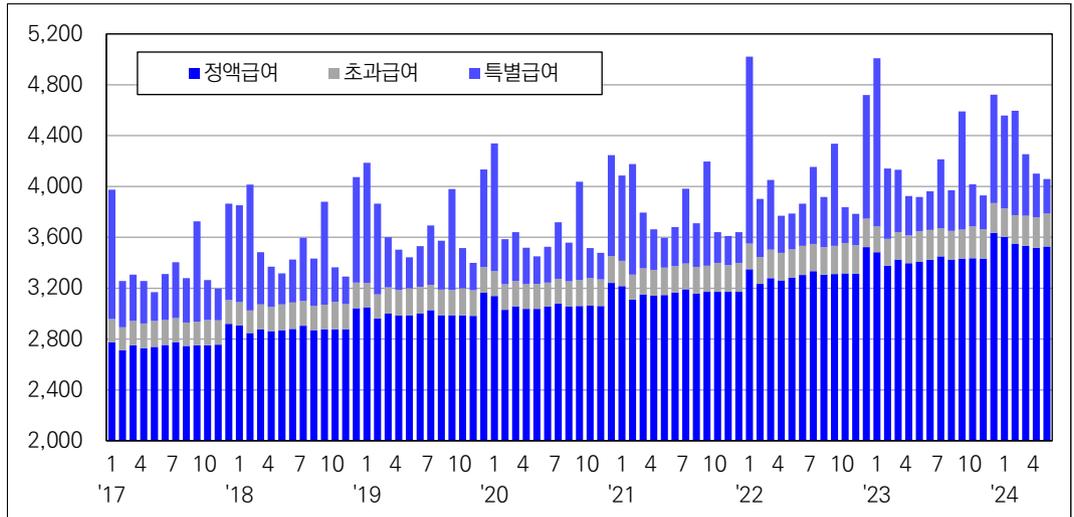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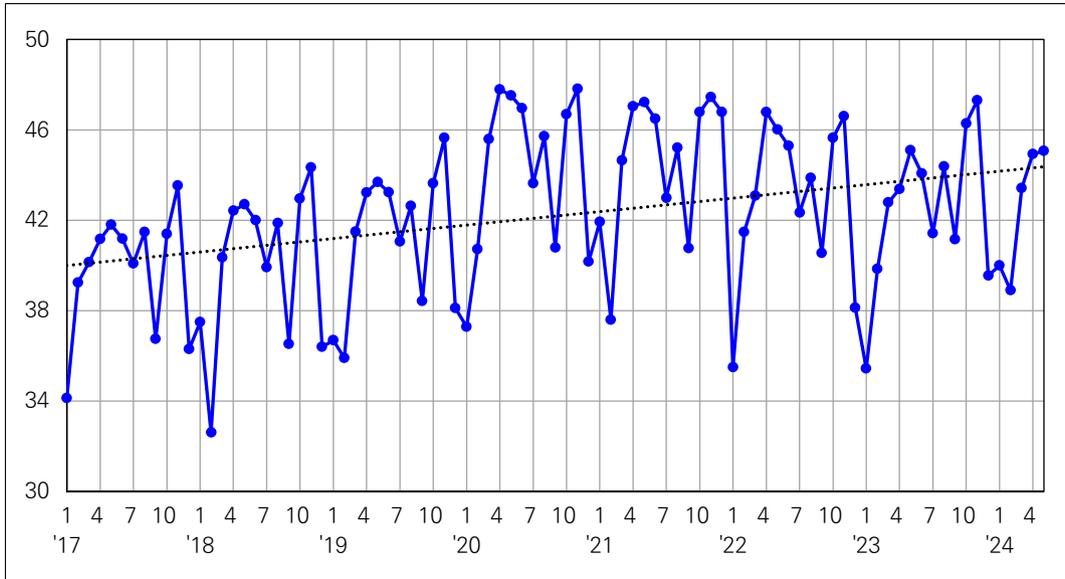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5월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3.4%

- 2024년 5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350만 1천 원)과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540만 4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2%, 3.4% 증가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확대(1.1%p)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증가폭(0.8%p)의 확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제조업(6.6%), 건설업(6.3%), 도매 및 소매업(5.7%) 순으로 정액급여 증가폭이 컸음.
 - 이와는 달리 중소기업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정액급여 증가폭은 하락(-0.4%p)하였으나, 특별급여 증가폭이 플러스(+)로 전환되어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하였음.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2.9%p),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2.4%p), 건설업(-2.3%p) 부문에서 정액급여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6%, 2.7% 상승하였음.
 - (1~5월 평균)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3.1%)은 전년동기간대비 상승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0.3%)은 전년동기간대비 하락하였음.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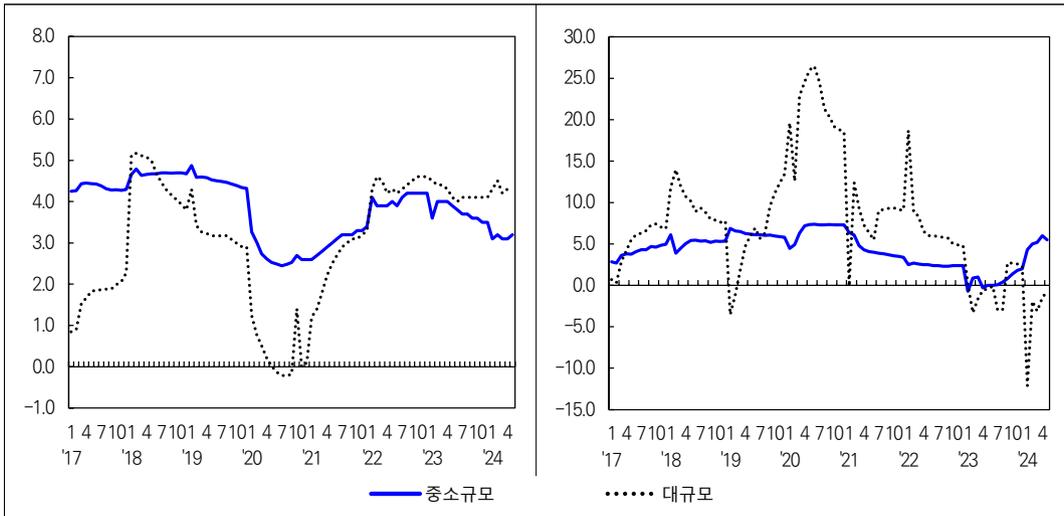
| | | 2022 | 2023 | 2023 | | 2024 | |
|-------|----------|--------------|--------------|--------------|--------------|---------------|--------------|
| | | | | 1~5월 | 5월 | 1~5월 | 5월 |
| 중소 규모 | 소 계 | 3,462 (4.4) | 3,537 (2.2) | 3,505 (2.3) | 3,392 (3.1) | 3,615 (3.1) | 3,501 (3.2) |
| | 상용임금총액 | 3,675 (4.7) | 3,767 (2.5) | 3,732 (2.8) | 3,603 (3.5) | 3,852 (3.2) | 3,732 (3.6) |
| | 정액급여 | 3,139 (4.2) | 3,249 (3.5) | 3,227 (3.9) | 3,228 (3.7) | 3,329 (3.2) | 3,335 (3.3) |
| | 초과급여 | 186 (5.7) | 187 (0.8) | 180 (-0.7) | 200 (6.0) | 196 (8.5) | 215 (7.6) |
| | 특별급여 | 350 (8.7) | 331 (-5.3) | 324 (-5.8) | 174 (-3.0) | 327 (0.8) | 182 (4.4) |
| | 임시일용임금총액 | 1,711 (2.4) | 1,746 (2.0) | 1,698 (0.0) | 1,746 (1.4) | 1,792 (5.5) | 1,809 (3.6) |
| 대규모 | 소 계 | 5,922 (6.1) | 6,071 (2.5) | 6,302 (1.8) | 5,228 (2.3) | 6,284 (-0.3) | 5,404 (3.4) |
| | 상용임금총액 | 6,049 (6.4) | 6,212 (2.7) | 6,447 (2.0) | 5,341 (2.5) | 6,431 (-0.3) | 5,524 (3.4) |
| | 정액급여 | 4,155 (4.6) | 4,325 (4.1) | 4,280 (4.1) | 4,218 (3.4) | 4,465 (4.3) | 4,394 (4.2) |
| | 초과급여 | 377 (5.5) | 406 (7.6) | 391 (6.6) | 420(10.8) | 424 (8.5) | 458 (9.0) |
| | 특별급여 | 1,516(11.8) | 1,481(-2.3) | 1,777(-3.5) | 704(-7.0) | 1,542(-13.2) | 673(-4.4) |
| | 임시일용임금총액 | 2,321 (4.8) | 2,375 (2.3) | 2,282(-0.4) | 2,108 (0.6) | 2,265 (-0.7) | 2,165 (2.7)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5월 월평균 임금은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4년 5월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7.2%), 금융 및 보험업(4.7%), 정보통신업(4.6%)이었음.

- 특히 운수 및 창고업(7.2%)의 임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특별급여(369.6%)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함.
- 제조업(2.4%)의 임금상승률은 평균상승률을 하회하였고, 이는 대규모 사업체에서 특별급여(-31.6%)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
- 5월 기준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67만 6천 원)이었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10만 5천 원)이었음.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 천 원, %)

| | 2022 | 2023 | 2023 | | 2024 | |
|---------------------|--------------|--------------|--------------|--------------|--------------|--------------|
| | | | 1~5월 | 5월 | 1~5월 | 5월 |
| 전 산업 | 3,869 (4.9) | 3,966 (2.5) | 3,979 (2.5) | 3,703 (3.1) | 4,067 (2.2) | 3,823 (3.2) |
| 광업 | 4,608 (4.4) | 4,636 (0.6) | 4,571 (0.9) | 4,556 (0.4) | 4,829 (5.6) | 4,758 (4.4) |
| 제조업 | 4,484 (5.8) | 4,633 (3.3) | 4,713 (3.1) | 4,226 (4.5) | 4,718 (0.1) | 4,326 (2.4) |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6,907 (2.3) | 7,188 (4.1) | 7,122(13.2) | 5,924 (9.0) | 7,573 (6.3) | 6,067 (2.4) |
|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 4,168 (1.8) | 4,297 (3.1) | 4,146 (3.2) | 4,193 (6.5) | 4,313 (4.0) | 4,229 (0.8) |
| 건설업 | 3,229 (4.0) | 3,359 (4.0) | 3,333 (4.3) | 3,303 (5.7) | 3,455 (3.7) | 3,348 (1.4) |
| 도매 및 소매업 | 3,773 (6.3) | 3,921 (3.9) | 3,900 (4.9) | 3,684 (4.4) | 4,037 (3.5) | 3,843 (4.3) |
| 운수 및 창고업 | 4,040 (6.5) | 4,185 (3.6) | 4,084 (6.4) | 3,803 (4.8) | 4,296 (5.2) | 4,075 (7.2) |
| 숙박 및 음식점업 | 2,004 (5.2) | 2,097 (4.7) | 2,076 (5.4) | 2,054 (3.2) | 2,145 (3.3) | 2,105 (2.5) |
| 정보통신업 | 4,999 (4.2) | 5,120 (2.4) | 5,215 (1.4) | 4,805 (2.2) | 5,450 (4.5) | 5,028 (4.6) |
| 금융 및 보험업 | 7,324 (5.2) | 7,338 (0.2) | 7,710(-2.4) | 6,375(-0.5) | 7,788 (1.0) | 6,676 (4.7) |
| 부동산업 | 3,086 (4.5) | 3,117 (1.0) | 3,121(-0.1) | 3,022 (3.0) | 3,178 (1.8) | 3,105 (2.8)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5,376 (5.3) | 5,464 (1.6) | 5,372 (1.8) | 4,985 (2.1) | 5,452 (1.5) | 5,132 (2.9) |
|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 2,584 (3.7) | 2,687 (4.0) | 2,652 (3.4) | 2,621 (4.1) | 2,768 (4.4) | 2,729 (4.1) |
| 교육서비스업 | 3,435 (2.4) | 3,508 (2.1) | 3,562 (2.3) | 3,287 (2.3) | 3,671 (3.1) | 3,348 (1.9)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3,122 (3.6) | 3,132 (0.3) | 3,102 (0.1) | 3,063 (0.6) | 3,190 (2.8) | 3,156 (3.0) |
| 여가 관련 서비스업 | 3,077 (2.8) | 3,058(-0.6) | 3,060 (0.8) | 2,894 (0.7) | 3,112 (1.7) | 2,956 (2.2) |
|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2,832 (4.9) | 3,009 (6.2) | 2,982 (6.4) | 2,827 (4.6) | 3,056 (2.5) | 2,936 (3.9)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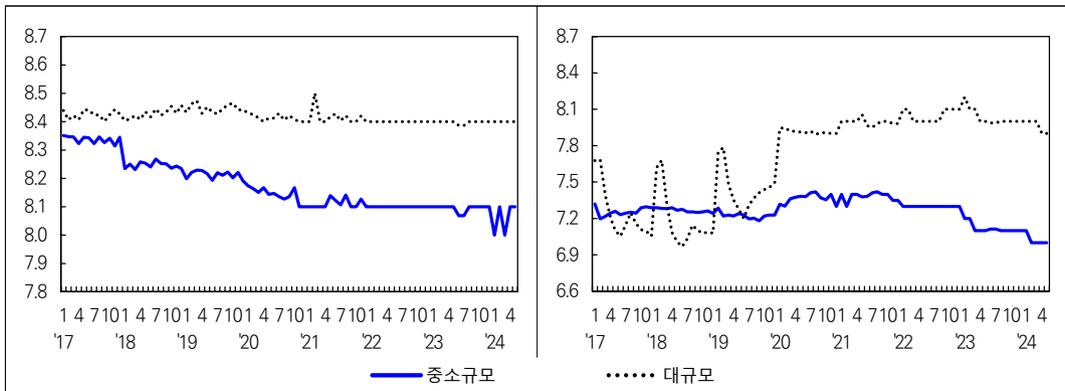
- (1~5월 평균)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기간대비 임금이 상승하였음. 특히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6.3%), 운수 및 창고업(5.2%), 정보통신업(4.5%)의 임금상승폭은 평균 상승폭(2.2%)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5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4시간 감소(근로일수 동일)

- 2024년 5월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시간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161.2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8시간 감소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86.3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1시간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 월력상 근로일수가 동일함에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1.5%), 교육서비스업(-1.1%), 금융 및 보험업(-0.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9%) 부문에서 근로시간 감소가 컸음.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숙박 및 음식점업(-11.6%), 교육서비스업(-11.0%), 제조업(-7.3%) 부문에서 근로시간 감소가 다른 산업에 비해 컸음.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의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증가가 컸던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5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152.4시간)과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157.7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4시간, 1.2시간 감소하였음.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을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 | | 2022 | 2023 | 2023 | | 2024 | |
|----------|------------|-------------|-------------|-------------|-------------|-------------|-------------|
| | | | | 1~5월 | 5월 | 1~5월 | 5월 |
| 중소 규모 | 전체 근로시간 | 158.3(-1.2) | 155.3(-1.9) | 155.6(-0.4) | 153.8(-4.8) | 154.4(-0.8) | 152.4(-0.9) |
| | 상용 총근로시간 | 165.9(-1.1) | 164.0(-1.1) | 164.0(0.4) | 162.3(-4.2) | 163.5(-0.3) | 161.6(-0.4) |
| |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 158.2(-1.2) | 156.7(-0.9) | 156.9(0.7) | 154.3(-4.5) | 156.0(-0.6) | 153.4(-0.6) |
| | 상용 초과근로시간 | 7.7(0.0) | 7.3(-5.2) | 7.1(-7.8) | 8.0(1.3) | 7.4(4.2) | 8.2(2.5) |
| | 임시일용 근로시간 | 96.4(-1.0) | 88.2(-8.5) | 88.3(-7.8) | 87.8(-9.5) | 84.9(-3.9) | 84.8(-3.4) |
| 대규모 | 전체 근로시간 | 160.4(-1.2) | 160.5(0.1) | 160.5(1.6) | 158.9(-2.7) | 160.4(-0.1) | 157.7(-0.8) |
| | 상용 총근로시간 | 161.7(-1.0) | 162.1(0.2) | 162.1(1.9) | 160.5(-2.5) | 162.0(-0.1) | 159.5(-0.6) |
| |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 150.6(-1.1) | 150.9(0.2) | 151.1(2.0) | 148.5(-3.1) | 150.6(-0.3) | 147.0(-1.0) |
| | 상용 초과근로시간 | 11.0(-0.9) | 11.2(1.8) | 10.9(-0.9) | 11.9(5.3) | 11.4(4.6) | 12.5(5.0) |
| | 임시일용 근로시간 | 125.0(-2.3) | 117.5(-5.9) | 117.2(-4.9) | 114.9(-8.2) | 114.7(-2.1) | 110.7(-3.7) |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5월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24년 5월 전년동월과 근로일수가 동일함에도 건설업(-2.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5%), 숙박 및 음식점업(-1.2%) 부문에서 근로시간 감소가 컸음.
-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169.4시간), 광업(169.1시간),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167.5시간) 순이었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24.6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시간, %)

| | 2022 | 2023 | 2023 | | 2024 | |
|---------------------|-------------|-------------|-------------|-------------|-------------|-------------|
| | | | 1~5월 | 5월 | 1~5월 | 5월 |
| 전 산업 | 158.7(-1.2) | 156.2(-1.6) | 156.4(-0.1) | 154.7(-4.4) | 155.4(-0.6) | 153.3(-0.9) |
| 광업 | 174.8(-2.8) | 168.5(-3.6) | 168.3(-2.7) | 163.3(-8.7) | 168.6(0.2) | 169.1(3.6) |
| 제조업 | 171.1(-1.4) | 170.5(-0.4) | 171.0(1.1) | 170.4(-2.6) | 171.1(0.1) | 169.4(-0.6) |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158.6(-1.9) | 160.0(0.9) | 159.4(2.2) | 154.0(1.0) | 155.5(-2.4) | 152.0(-1.3) |
|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 174.4(-1.4) | 170.0(-2.5) | 169.5(-2.2) | 167.8(-6.6) | 169.7(0.1) | 167.5(-0.2) |
| 건설업 | 134.3(-1.2) | 128.7(-4.2) | 129.2(-2.7) | 127.4(-6.7) | 128.0(-0.9) | 124.6(-2.2) |
| 도매 및 소매업 | 162.3(-0.9) | 159.2(-1.9) | 159.5(-0.4) | 156.6(-5.2) | 158.0(-0.9) | 155.7(-0.6) |
| 운수 및 창고업 | 160.6(0.2) | 160.6(0.0) | 159.9(1.3) | 159.2(-2.7) | 159.8(-0.1) | 158.7(-0.3) |
| 숙박 및 음식점업 | 146.5(-1.3) | 138.8(-5.3) | 138.4(-3.8) | 138.1(-7.6) | 137.0(-1.0) | 136.4(-1.2) |
| 정보통신업 | 162.7(-0.9) | 162.2(-0.3) | 161.8(0.9) | 158.9(-4.3) | 162.3(0.3) | 159.0(0.1) |
| 금융 및 보험업 | 159.8(-1.3) | 159.3(-0.3) | 160.2(2.0) | 156.4(-4.2) | 158.9(-0.8) | 154.8(-1.0) |
| 부동산업 | 169.4(-1.4) | 167.5(-1.1) | 167.3(0.3) | 166.2(-3.7) | 167.3(0.0) | 166.6(0.2)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60.3(-0.8) | 158.8(-0.9) | 159.0(0.7) | 156.1(-4.5) | 158.3(-0.4) | 154.7(-0.9) |
|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 159.8(-1.4) | 158.2(-1.0) | 157.9(0.0) | 156.4(-4.2) | 157.9(0.0) | 156.2(-0.1) |
| 교육서비스업 | 136.1(-0.8) | 135.9(-0.1) | 136.1(2.0) | 134.9(-2.3) | 134.3(-1.3) | 133.8(-0.8)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55.3(-1.9) | 150.7(-3.0) | 150.5(-1.8) | 149.1(-6.2) | 148.5(-1.3) | 146.5(-1.7) |
|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50.8(-1.2) | 148.2(-1.7) | 148.9(0.1) | 148.1(-4.1) | 145.8(-2.1) | 145.9(-1.5) |
|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60.3(-1.3) | 160.3(0.0) | 160.3(1.1) | 158.2(-3.2) | 159.0(-0.8) | 157.0(-0.8) |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4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20건
 - － 7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21건)보다 1건 적은 수치임.
- 2024년 7월 조정성립률 29.2%
 - － 7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12.9%보다 16.3%p 높은 수치임.

〈표 1〉 2023년, 2024년 7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 | 접수 건수 | 처리 건수 | 조정성립 | | | 조정불성립 | | | 행정 지도 | 취하 철회 | 진행 중 | 조정 성립률 |
|----------|-------|-------|------|--------|-------|-------|--------|-------|-------|-------|------|--------|
| | | | 소계 A | 조정안 수락 | 합의 취하 | 소계 B | 조정안 거부 | 조정 중지 | | | | |
| 2024. 7. | 20 | 25 | 7 | 4 | 3 | 17 | 1 | 16 | 1 | 0 | 11 | 29.2% |
| 2023. 7. | 21 | 33 | 4 | 2 | 2 | 27 | 1 | 26 | 2 | 0 | 9 | 12.9% |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4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
 - － 7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건)와 같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

〈표 2〉 2023년, 2024년 7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 | 접수 건수 | 처리 건수 | | | | 진행 중 |
|----------|-------|-------|------|------|------|------|
| | | 소계 | 중재재정 | 행정지도 | 취하철회 | |
| 2024. 7. | 1 | 0 | 0 | 0 | 0 | 1 |
| 2023. 7. | 1 | 0 | 0 | 0 | 0 | 3 |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4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218건
 - 7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95건)보다 23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2.3%(45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7.7%(157건)를 차지함.

〈표 3〉 2023년, 2024년 7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 | 접수 건수 | 처리 내역 | | | | | | | 진행 중 |
|----------|-------|-------|-------|-------|-----|----|----|----|------|
| | | 계 | 전부 인정 | 일부 인정 | 기각 | 각하 | 취하 | 화해 | |
| 2024. 7. | 218 | 202 | 39 | 6 | 122 | 2 | 20 | 13 | 666 |
| 2023. 7. | 195 | 188 | 35 | 4 | 91 | 8 | 23 | 27 | 552 |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4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¹⁾ 건수는 10건
 - 7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4건)보다 4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31.3%(5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68.8%(11건)를 차지함.

〈표 4〉 2023년, 2024년 7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 | 접수 건수 | 처리 내역 | | | | | | | 진행 중 |
|----------|-------|-------|-------|-------|----|----|----|----|------|
| | | 계 | 전부 인정 | 일부 인정 | 기각 | 각하 | 취하 | 화해 | |
| 2024. 7. | 10 | 16 | 5 | 0 | 7 | 3 | 1 | 0 | 9 |
| 2023. 7. | 14 | 14 | 7 | 0 | 4 | 1 | 2 | 0 | 9 |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노란봉투법 두 번째 국회 통과

- 8월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석 179인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의결되었음.
- 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했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노조법 2조4호 라목도 삭제했음.
-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음.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도 가능해졌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제한했음.
- 노동자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음.
- 그동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을 둘러싸고 각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가 있었음.
- 노동계는 8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토론회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중 가장 의미 있는 노력은 노란봉투법”이라고 주장했음. 불평등의 당사자인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교섭할 때 이중구조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시각임.
-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직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파괴행위 등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하였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월 8일 중견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견기업의 70.1%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 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하였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였음.
- 8월 16일 대통령실은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노동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음.
- 8월 18일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84.3%가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동의했고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동의 의견도 7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u>이 경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u> |
|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차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사업재편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한다).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의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u>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u> ,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삼성E&A노조 성과급 제도개선 요구

- 7월 15일 삼성E&A노조(옛 삼성엔지니어링)는 7월 9~11일 삼성E&A 임직원 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 7월 8일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지급된 TAI(목표달성장려금) 결과(7월 8일)에 대해 응답자 85.1%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음.
-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부별 평가 기준이 불분명하다'가 57%로 가장 많았고, '회사 평가가 A라면 본부 평가도 상향돼야 한다'는 답변이 31.1%로 뒤를 이었음.
- TAI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실적을 바탕으로 지급되는데, 회사 평가와 사업부 평가를 반영해 최대 월 기본급 100%까지 차등 지급함.
- 노동조합에 따르면, 삼성E&A 직원들은 회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사업부 평가에서 영업 및 신사업 담당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C등급을 받았다고 함.
- 노조는 지난 12일 김봉준 위원장 명의로 남궁홍 대표이사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음.
- 노조는 올해 11월 단체협약 갱신을 앞두고 단체교섭 자리에서 성과급 제도개선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할 계획임.

◆ 교원단체, 교사에 정치기본권 요구

- 7월 16일 전교조·교사노조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음.
- 이들 단체는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하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교원 대상 인식조사를 진행했음.
- 설문조사는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 9,026명이 조사에 참여했음.
- 조사에서 교사 98.2%(매우 그렇다 88.8%, 그렇다 9.4%)는 교사 요구가 정부에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음.
-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질문에 동의한 교사는 99.1%였음.
- 발표에 앞서 6월 20일 국회의원 16인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4개 법률 개정안(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을 발의한 바 있음.
- 5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직 사회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국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 2006년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2011년 유엔(국제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면서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해외의 교사와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치기본권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특별한 정치 기본권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있으며, 미국은 해치법 개정법(Hatch Act Reform Amendment)이 통과 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음.
- 미국 해치법 개정법에 따라 정당가입이 가능하며, 공립학교 교원은 일반시민과 같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교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로부터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사표명이 가능하며 후보자의 선거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보장됨.

◆ 삼성 에버랜드 불법파견 인정

- 7월 18일 서울동부지법 15민사부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셔틀버스업체인 CS모터스 노동자가 에버랜드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를 삼성물산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음.
-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CS모터스 소속 노동자를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했음.
- 재판부는 삼성물산 CS혁신파트 부서가 고객으로부터 CS모터스 노동자에 대한 근무태도 평가를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노동자를 재배치한 점 등을 지휘·감독 근거로 봤음.
- 이 밖에도 △이메일 업무지시 △일일업무일지 보고 △용모·복장 규정 적용 △카카오톡을 통한 일상적 업무 지시 △교육 및 근태관리 △휴가 및 휴게 관리 등 전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을 했음.
- 재판부는 “CS모터스 소속 노동자는 삼성물산으로부터 직·간접적 지휘·명령을 받으며 삼성물산 소속 노동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삼성물산 사업에 편입되는 등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시했음.
-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의 첫 불법파견 판결은 아님. 2022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음.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임.
- CS모터스는 2011년 설립해 삼성물산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에버랜드 고객과 임직원을 수송하는 셔틀버스와 에버랜드 내 사파리월드 버스, 수륙양용차량, 비상차량, 청소차량 등을 운행하는 회사임.
-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9명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조합원임.

◆ 대법원 ‘타다 기사’ 노동자성 인정

- 7월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음.
- 이번 소송은 타다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가 2020년 3월 서비스 중단에 따라 해고되면서 시작됐음.
- 타다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쏘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했음. 재판부는 △타다 기사들이 업무수행 방식, 근태관리 업무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서비스 운영자에게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있었던 점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노동자성 인정 지표로 삼았음.

◆ 중앙노동위 위원·조사관 85% “판정보다 화해가 바람직”

- 7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중노위와 전국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966명을 대상으로 7월 2~1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판정과 화해 중 어느 것이 권리구제에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으니 화해(73.5%)를 선택한 이들이 판정(26.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
- ‘화해’의 실효성이 좋다고 답한 이들은 사용자위원(82.5%)·공익위원(72.9%)·조사관(72.8%)·근로자위원(65.6%) 순으로 많았음.
- 판정과 화해 중 더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화해’가 85.0%, ‘판정’이 15.0%였고, 공익위원은 90.2%, 근로자위원은 79.4%, 사용자위원은 89.1%, 조사관은 69.1%가 화해를 선호했음. 판정을 내리기 전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화해 우선주의에는 88.0%가 찬성했음.
- 화해를 통한 사건 해결에 역할이 가장 큰 주체로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46.4%로 가장 많이 지목됐고, 공익위원(32.8%)·조사관(12.0%)이 뒤를 이었음.

◆ ‘자동화 물류센터’ 노동자 외주화·과로 이끈다

- 7월 19일 고용정보원은 ‘유통·물류 산업의 생산양식과 고용의 변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물류·유통업에 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극단적인 짜내기 노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노동시장에서 유통과 물류업의 고용 비중은 상승하고 있음.
- 전 산업 대비 유통업 고용 비중은 2010년 12.1%에서 2021년 13.9%로 꾸준히 확대됐음.
- 물류업은 2010년 4.7%에서 2015~2017년 4.2%로 저점을 찍다가 2021년 4.5%까지 반등했음.
- 이는 2015년을 전후해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하면서 인터넷과 홈쇼핑 같은 유통채널 매출이 증가하고 덩달아 물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음.
- 고용은 물류센터가 자동화될수록 외주화됐고, 물류센터를 소유한 기업은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실제 운용인력을 인력회사에 도급을 주거나 파견받는 방식으로 해소했음.
- 보고서에서는 “물류센터 작업장에는 본사가 파견한 직원과 자회사 정규직 관리자가 극소수 있고, 현장노동자 고용형태는 일용·단기임시직·무기계약직”이라고 하였음.
- 유입된 노동력은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더욱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음. 재고관리 업무에 개인별 PDA와 스캐너 등이 지급돼 개별 노동자 업무량이 중앙 컴퓨터에 송출돼 시간당 생산량(UPH)이 실시간으로 집계되었음.
- 보고서는 “온라인 주문과 물류, 배송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배송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경쟁력이 됐다”며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 건강과 적정 수입, 안전이 고려

되지 못했고 대부분이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폭우에도 근무 지속, 이동노동자 96% “악천후로 안전 위협”

- 7월 16일 서비스연맹은 ‘기후재난 시기 이동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94.4%가 ‘약간 심각’ 혹은 ‘아주 심각’하다는 답을 골랐고, 응답자 96.1%가 근무 중 악천후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 있다고 하였으며, 폭염으로 건강 이상을 경험한 사람도 85.1%였음.
- 위협을 느껴도 일을 멈추지 못한 이유로는 ‘실적 때문’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고, ‘수익 감소’는 35.5%, ‘계약해지 가능성’은 6.3%였음.
- 노동자들은 사측의 안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협이 예상될 때 ‘회사가 선제적으로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즉시 작업중단을 내려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47.5%였음.
- 조사는 7월 12~14일 연맹 조합원인 이동노동자 1,1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했고, 전국의 택배·라이더·방문점검·설치수리·학습지·대리운전·방과후강사 노동자가 조사에 참여했음.

◆ 태풍·폭우에도 직장인 60% ‘정시 출근’

- 7월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1.4%는 태풍·폭우 등으로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는데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음.
- 응답자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직접 당하거나 그런 사례를 목격했다’고 하였음.
- 현행법상 자연재해에 따른 별도 휴업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태풍이나 호우 관련 경보가 발령돼도 출퇴근 시간 조정, 재택근무 여부 등은 전적으로 사업주 재량이나 각 회사별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달려 있음.
- 직장갑질119는 노동관계법에 기후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하거나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음.
- 이외에도 폭염 시 옥외·이동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권’ 의무화를 주장하였음.

◆ 직장내 괴롭힘도, 정신건강 피해도 여성 비중 높아

- 7월 25일 한국노총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음.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노총이 2023년 6월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 결과가 공개됐음.
- 조사 결과 61.5%가 최근 3년 이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음. 괴롭힘 경험률은 남성(48.8%)보다 여성(68.9%)이 더 높았음.
- 괴롭힘 유형 가운데 신체적 폭력 및 위협 경험률도 남성 14.1%, 여성 21.8%로 차이를 보였음.
- 직장내 따돌림을 경험한 비중은 남성 32.7%, 여성 43.5%로 조사됐는데, 여성의 22.4%는 "주 1회 이상 투명인간 취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음.
- 직장내 괴롭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도 비슷했음.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음.
- ILO 협약 190호는 조약 정의규정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지속성과 관련 없이 신체·정신·성·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주 4일제 실험했더니, 간호사 친절해지고 퇴사도 줄어

-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세브란스병원 주 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토론회에서 공개된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주 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병동 3곳의 퇴사율은 전년에 견줘 3.6~8.8%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음.
- 서울 신촌 171병동은 퇴사율이 3.6%에서 0%로, 신촌 172병동은 9.1%에서 2.9%로, 강남 83병동은 27.0%에서 18.2%로 줄었음. 주 5일제로 운영된 병동 2곳 퇴사율이 전년도보다 늘거나 비슷한 것과 대조적임.
- 퇴사율 감소는 주 노동시간이 평균 9시간 40분 줄어들면서 일·생활 균형이 확보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주 4일제를 시행한 병동 간호사들의 '행복도'는 2022년 5.3점(10점 만점)에서 2023년 6.2점으로, 일·생활 균형 만족도는 2022년 3.7점에서 5.5점으로 올랐음. 지난해 주 5일 근무자의 행복도 5.4점, 일·생활 균형 만족도 5.0점보다 높은 수치임.
-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주 4일제를 시행한 신촌 172병동의 경우 지난해 환자들로부터 접수한 친절 건수는 111건으로 전년(42건) 대비 2.6배였음.

- 주 5일제 병동의 친절 건수도 다소 늘었지만, 주 4일제 병동보다 증가 폭이 작았음.
- 세브란스병원은 20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진행했음. 이를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고 시범사업 참여자의 임금 10%를 삭감했음.

◆ 아빠 육아휴직 증가 추세

- 8월 4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6만 9,631명(공무원·교원 제외)이었고, 지난해 상반기 6만 7,465명보다 3.2% 늘었음.
-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의 32.3%인 2만 2,460명이 남성이었고, 지난해 상반기보다 15.7% 급증했음.
- 여성 육아휴직자는 4만 7,171명(67.7%)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줄었음.
- 남성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 2023년 28.0% 등으로 증가 추세임.
-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올해부터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 영향이라는 분석임.
- 다만 기업 규모별로 보면 격차가 두드러졌음. 1,0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비율은 43.5%인 반면 100인 미만 기업에서는 22.7%에 그쳤음.

◆ 외국인 가사도우미 입국

- 7월 1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8월 6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음.
- 신청 가정은 파트타임, 풀타임 등 개별 가정 상황에 맞게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은 2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이용요금 정보 등은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100명 규모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가정 가운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정을 이용자로 우선 선정하였음.
- 고용부 시범사업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2곳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들을 개별 가정에 보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고 들어온 정식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최

- 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예상되는 이용 요금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기타 보험료 등을 더한 수준으로 풀이됨.
- 1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돌봄 관련 교육을 780시간 이상 받은 돌봄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되었음.
 - 이들은 8월에 입국해 4주 동안 한국 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임.

〈표 6〉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선정결과 : 157가정

| 지역별 | 신청유형 | 1일 이용시간 | 이용기간 | 주당 이용일수 |
|---------|------------|---------|-----------|------------|
| 동남권 59건 | * 맞벌이 150건 | | | |
| 도심권 50건 | -다자녀 97건 | 4시간 89건 | 1~2개월 2건 | 1~2회 17건 |
| 서북권 21건 | -한자녀 39건 | 6시간 8건 | 3~5개월 12건 | 3~4회 15건 |
| 서남권 19건 | -임산부 14건 | 8시간 60건 | 6개월 143건 | 5회 이상 125건 |
| 동북권 8건 | * 한부모 7건 | | | |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